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66
----------	-------

발의연월일 : 2026. 1. 6.

발 의 자 : 김현정 · 김문수 · 민병덕
박 정 · 박지원 · 백승아
복기왕 · 이수진 · 이정문
이주희 · 진성준 · 차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최근 특정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로, 하나의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로 접속하여 별도 결제 정보 입력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접근매체 등 정보 유출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의 결제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한 현행법상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 의무 대상에 동일 접근매체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침해사고”를 “침해사고(계열회사침해사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용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계열회사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접근매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접근매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계열회사침해사고의 발생 사실, 이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 그리고 접근매체 또는 금융정보와의 유사성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내용 등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21조의5제2항”을 “제21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계열회사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회사침해사고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열회사에서 계열회사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용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계열회사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접근매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접근매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계열회사침해사고의 발생 사실, 이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 그리고 접근매체 또는 금융정보와의 유사성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내용 등 통지에 필</u>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 4. (생략)

③·④ (생략)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침해사고(계열회사침해사고를 포함한다)-----

-----.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제2
1조의5제3항-----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신설>

7. ~ 12. (생략)

④ (생략)

제5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계열회사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